

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17호 |
| 의결 년월일 | 2006. 9. 15 (제130회) |

제출년월일 : 2006. 8. 31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주5일 근무제 시행, 부천시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세부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부천시의회 대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도록 변경함
(안 제2조제2항)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7일 이내”를 “토요일과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4항중 “국내여비규정”을 “「국내여비규정」”으로 한다.

1. 「부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제6조제1항제5호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하며,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중 “형사소송법”을 각각 “「형사소송법」”으로 하고, 제24조중 “부천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하며, 제26조중 “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와 부천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와 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감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 <p>제16조(여비 등 비용지급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시장 및 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</p> <p>2·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</p> <p>제2조(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토요일과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-----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여비 등 비용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1. 「<u>부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</p> <p>2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④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일당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<u>국내여비규정</u>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| <p>④----- ----- ----- 「<u>국내여비규정</u>」----- -----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|